

##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

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3호  
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1호  
(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  
일부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26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오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(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2. “새마을회원”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새마을사업”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)** 시장은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1. 16>

1.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
2. 새마을회원의 교육훈련, 연찬회, 워크숍 등 교육사업
3. 새마을의 날 행사
4.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
5. 독거노인, 다문화가족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그 밖의 소외 계층(이하 “독거노인 등”이라 한다)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
  - 가. 김장 및 장 담그기 지원 사업
  - 나. 집 고쳐주기 사업
  - 다. 그 밖에 독거노인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
6.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

##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

7.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
8. 휴경지 경작 사업
9.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**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5. 11. 16>

**제5조(포상)**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게 포상 할 수 있다.

**제6조(중복지원의 금지)**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**제7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4. 12. 11>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2. 11 조례 제1381호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**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**제3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

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⑪ 「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「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오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」”를 “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⑫ 부터 ③③ 까지 생략

부칙 <2015. 11. 16 조례 제142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